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9가합50069 판결 [연대보증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유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정

담당변호사 허성훈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원

담당변호사 강진석

변론 종결 2019. 11. 8.

판결 선고 2019. 12.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3.부터 2019. 6.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31. 설립되어 조직문화 예술교류활동 등을 영위하는 중국 법인이고, 피고는 연예인 매니지먼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기획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4. 27. 이 사건 기획사와 사이에 이 사건 기획사 소속의 D(활동명E, 이하 'E'라 한다)에 대한 중화권 지역 매니지먼트 권한을 3년 6개월 간 독점적으로 위임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2011. 12. 31. 이 사건 기획사와 E 사이의 전속계약이 종료되었다.

라. 이 사건 기획사는 2012. 1. 3. 'E와의 전속계약 만료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함을 확인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고 등의 피해와 손실에 대하여 사과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 책임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조율과 협의를 통하여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사과문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원고, 이 사건 기획사 및 그 대표인 피고는 2012. 11. 13. 이 사건 기획사가 2013. 5. 30.까지 원고에게 5억 2,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2012.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체납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는 이 사건 기획사의 위 채무를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하는 취지의 채무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하고, 이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기획사의 이 사건 약정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5억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된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12. 11.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6. 4.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¹⁾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가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계약금 지급 여부 등에 관한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기획사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5억 원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E와의 전속계약 종료에 관하여 이 사건 기획사의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기획사 및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청구로서 원고의 계약금 지급 여부 또는 E와의 전속계약 종료에 관한 이 사건 기획사의 과실 유무는 이 사건 약정금 청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강박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인 F이 '피고의 손가락을 잘라서 지장을 찍을 수도 있다'고말을 하는 등 피고를 협박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강박의 정도가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하는데(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73708, 73715 판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대표자 등이 피고에게 불법적으로 어떠한 해악을 고지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하여 이 사건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설령 피고의 주장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주장으로 선택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측의 강박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일로부터 약7년이 지난 시점에 제출된 2019. 9. 3.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 주장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변제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이후 원고에게 3,7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피고가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을 제1호증)은 이 사건 약정 전인 2011. 6. 28.부터 2012. 10. 10.까지의 거래내역에 관한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하헌우, 판사 김성겸, 판사 곽동훈

1) 원고, 피고, 이 사건 기획사가 이 사건 약정금지급의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체납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하기로 약정하면서도 위 "체납이자율"의 비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보다 낮은 이율을 약정하거나 이율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법정이율에 의하여 산정되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원고가 민사 법정이율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

